**의약외품의 “주름개선” 광고표현에 관한 유의사항**

**（일본화장품공업회 화장품광고심사회의 결과 등에서）**

◇ 승인받은 효능효과대로 올바르게 기재할 것．

“주름개선”의 승인 효능을 취득한 의약외품에서 “주름에” “신경 쓰이는 주름에” 등의 광고표현은 주름에 대한 개선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주름예방 주름해소 등으로 오해를 불러 효능효과 범위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 주름 등급 등 주름 효능 평가시험에 관한 설명은 효능효과 보증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 주름은 연령증가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발생한 주름의 개선표현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름개선에 의한 젊음으로 돌아가거나 연령증가를 방지 등은 불가하다.

◇ ”개선”의 정도는 사실 범위※ 표현에 그칠 것.

※ 항주름 효능평가 가이드라인의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정도

“깊은 주름”까지 개선한다는 표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주름개선 유효성분에서의 작용기서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자료에 기재 범위를 초과하지 말 것. 또한, 작용기서가 효능효과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